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477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477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51710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23. 4. 19.

판결 선고 2023. 5.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517102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의 2020. 7.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들은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7. 17. 접수 제948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들이고, A은 피고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들의 위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A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A에 대한 채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당시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공장 설비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A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전제로 그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수준,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A의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사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A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중연

판사임광호

판사선의중

별지